

##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4212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조국희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6.27.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30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p>&lt;비고&gt;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-목록1.일부 및 목록2. 전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.</p> <p>비고란</p> <p>-일괄매각. -목록1.토지의 일부 및 목록2.토지의 전부는 지상에 타인이 점유중이므로 이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받는 감정평가액으로 최저매각가격 산정함. -본건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하며 지상의 활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. -지분매각 -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.(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유자는 이후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. -목록1.3.4.토지의 일부는 현황'도로'임을 감안하여 평가함. -본건 토지는 주변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경계의 확정, 권리관계는 측량등을 통하여 입찰 전 확인 요망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42122

[물건 1]

-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-3  
대 119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17번 길명숙 지분 119분의 1.92전부

-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-6  
대 40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15번 길명숙 지분 40분의 0.65 전부

-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-5  
대 145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17번 길명숙 지분 145분의 2.36 전부

-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-2  
대 417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17번 길명숙 지분 417분의 18.21 전부

감정평가액		13,284,98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19	13,284,980	1,328,500
2회	2026.03.09	9,299,480	930,000
3회	2026.04.06	6,509,630	651,000
4회	2026.06.01	4,556,740	455,700

-일괄매각.

-목록1.토지의 일부 및 목록2.토지의 전부는 지상에  
타인이 점유중이므로 이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받는 감

---

정평가액으로 최저매각가격 산정함.

-본건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하며 지상의 활잡  
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.

-지분매각

-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.(공유자가 우선  
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기일 종결 고  
지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유자는 이  
후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.

-목록1.3.4.토지의 일부는 현황'도로'임을 감안하여  
평가함.

-본건 토지는 주변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 
구체적인 경계의 확정, 권리관계는 측량등을 통하여 입  
찰 전 확인 요망.

---